

발주자·수급인 보존서류 및  
법 규정 적합 보호구·설비·장비·소모품 등

보존 서류는 해체·제거작업 수행자가 구비하여 준공서류 제출 때 첨부하여 법 기준을 준수한 사실을 입증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설계내역, 시방서, 법 기준 내용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서류 검사·확인 후 준공 필 및 공사대금을 지급 하여야 할 기본 구비 서류며,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.

[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]

법 : 제13조(감독) 제14조(검사) 시행령 : 제55조(검사) 개정08.2.9

[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]

법 : 제26조(감독) 제17조(검사) 시행규칙 : 제65조(감독 및 검사)

### [ 보건법 ]

#### 제64조 (서류의 보존)

④ 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제38조의4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업무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[과태료 부과기준 : 사업주가 법정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(각 조항별) / 100 만원 개정 08. 8. 21]

### [ 시행규칙 ]

#### 제144조(서류의 보존)

① 법 제6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94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(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존은 포함한다)기간을 5년으로 한다. 다만,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암성확 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.

④ 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

1. 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
2. 석면해체·제거 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 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)
3.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

### 석면 노출 허용기준

관계 부처	노출 허용 기준 / 공기 cc당
노동부 농도기준	0.01 개 / cc [석면제거작업장]
환경부 농도기준	0.01 개 / cc [석면제거작업장]

## 환경부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<09. 4. 10. 시행>

< 표1. 폐기물공정시험법 대상 시설 크기별 최소 시료 채취 수 >

구분	대상	동일시료 채취 구역 (㎡)	최소 시료 수
- 건축물 - 시설물	천장, 벽, 바닥재의 경우	25㎡	1
		25㎡ ~ 100㎡	3
		100㎡ ~ 500㎡	5
		500㎡ 이상	7
	단열재의 경우	2.0m 혹은 ~ 1.0m 미만	1
		2.0m 혹은 ~ 1.0m 이상	3
	기타 재료의 경우	1.0m 미만	1
		1.0m 이상	3

< 표2. 뿜칠재 사용 건축물의 크기별 최소 시료 채취 수 >

구분	동일시료 채취 구역 (㎡)	최소 시료 수	권장 시료 수
- 건축물 - 시설물	25㎡ ~ 100㎡	3	9
	100㎡ ~ 500㎡	5	9
	500㎡ 이상	7	9

< 표3. 석면해체·제거 현장 공기 중 시료 채취 지점 >

작업	지점	시료의 수 / 지점	시료측정위치	
전	작업장	작업장 당 1곳	작업장 중앙 높이 0.8~1.2m	
중	위생설비 입구	1개 이상	위생설비 입구 높이 0.8~1.2m, 거리1m 이내	
	작업장 주변	실내	2개 이상	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0.8~1.2m
		실외	2개 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0.8~1.2m
	음압기	대표음압기 1대 이상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m 이내	
	폐기물 반출구	1개 이상	높이 0.8~1.2m, 폐기물 반출구에서 1m 이내	
후	작업장	작업장 당 1곳	작업장 중앙 높이 0.8~1.2m	

## ※ 보존서류 목차

### [준공서류 제출 때 첨부 및 현장비치]

1. 허가증 {작업완료 후 준공서류 첨부}
2. 도급인가증 {작업완료 후 준공서류 첨부}[도급에 의한 작업 시]
3. 허가 계획서 {노동청 제출 전 서명날인 후 복사 보관}
4. 관리감독자선임서 [교육수료증 포함] {계획서첨부 복사본}
5.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개인표 [교육수료증 포함] {계획서첨부 복사본}
6. 작업장순회점검표 2일 1회 이상 {작업완료 후 준공서류 첨부}
7. 석면농도측정결과서 (실외)건물별, (실내)각층 실별 {전·중·후 준공서류 첨부}[즉시 노동청제출]
8. 농도측정결과(근로자)통보확인서 {작업완료 후 준공서류 첨부}
9. 시공 전·후 사진 (실외)건물별, (실내)각층 실별 {작업완료 후 준공서류 첨부}
10. 시공 중 공정별 사진 (실외)건물별, (실내)각층 실별 {작업완료 후 준공서류 첨부}
11. 날짜별 법규정 적합 보호구지급대장 [지급주기포함] {작업완료 후 준공서류 첨부}
12. 근로계약서 {계획서첨부 복사본}
13. 현장별, 날짜별, 석면취급량 기록부 {작업완료 후 준공서류 첨부}
14. 사전조사서 {계획서첨부 복사본}
15. 지정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서 {계획서첨부 복사본}

부처	석면관련 적용 법
노동부	1. 산업안전보건법.      2.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.      3.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.
환경부	1. 폐기물관리법.      2. 대기환경보전법.      3. 유해화학물질관리법. 4. 환경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.      5.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 6.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등
국토해양부	1. 건설산업기본법

## [ 관련 법적 근거 ]

### 1. 허가증 [ 산안법 ]

제38조 (제조 등의 허가) [ 벌칙 : 5년이하 징역 , 5천만원이하 벌금 ]

-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·사용 또는 해체·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의 제조·사용·해체·제거설비, 작업방법 기타 허가의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(이하 "유해물질 제조·사용자등"이라 한다)는 그 제조·사용·해체·제거 설비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,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 방법에 의하여 물질을 제조·사용 또는 해체·제거하여야 한다.

[ 벌칙 : 3년이하 징역 , 2천만원이하 벌금 시행 05. 7 . 1 ]

### 2. 도급인가증 [ 산안법 ]

제28조 (유해 작업 도급금지) [ 벌칙 : 5년이하 징역 , 5천만원이하 벌금 ]

- ① 안전·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(하도급을 포함한다)을 줄 수 없다.

### 3. 허가 및 도급 계획서 [ 산안법 ]

[ 행정처분 : 1차/ 영업정지 3개월 , 2차/ 영업정지 6개월 , 3차/ 허가취소 ]

#### 시행규칙

제144조(서류의 보존) [ 벌칙 : 3백만원이하 과태료 ]

- 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.
- ④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

1. 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
2. 석면해체·제거 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)
3.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

## 4. 관리감독자 선임서 및 교육수료증 [ 산안법 ] [ 환경부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] [ 환경범죄단속 특별조치법 ]

[ 별칙 : 두지 아니하였을 때 / 5백만원이하 과태료 시행 08. 1. 1 ]

[ 별칙 : 특별조치법(양벌규정) 7년 이하징역 1억 원이하 벌금 ]

### 제14조 (관리감독자)

-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(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·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시행령

#### 제10조 (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)

-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·감독하는 작업(이하 이 조에서 "당해 작업"이라 한다)과 관련되는 기계·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·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
  2.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·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·사용에 관한 교육·지도
  3.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
  4.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·감독
-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 하고 시설·장비·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<신설 2008.8.21>
1.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
  2.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·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(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·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인 경우로 한정한다)

## 환경부, 「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」 [ 09. 4. 10 시행 ]

### 5. 건축물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장 관리에 관한 고려사항

- 5.1 건축물 소유자 등은 석면 및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석면 해체·제거 작업 관리·감독자(이하 "감독자"라 한다)로 지정하여야 한다.

※ 5.3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발생 시 그 책임을 진다.

- (1) 현장 감독 부실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문제 발생
- (2)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 미 제거 및 폐기물 처리 문제 발생
- (3) 석면 해체·제거 작업 완료 후 석면오염 문제 발생
- (4) 주변의 공기 중 석면 비산으로 인한 오염 사고 발생

## 5. 근로자특수건강진단 개인표 및 교육수료증 [ 산안법 ]

### 시행규칙

#### 제107조 (건강진단결과의 보존)

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## 6. 작업장순회점검표 2일1회 이상 [ 산안법 ]

[ 벌칙: 안전보건조치위반/ 5백만원 과태료 < 시행 08.8.21 >]

[ 양벌규정: 법인,대리인,개인에 대하여도 동법위반 시 동조 벌금을 과 한다.]

### 시행규칙

#### 제30조 (작업장의 순회점검등)

- ①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.
- ⑤ 법 제29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"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.
8.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
11.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

## 7. 석면 농도측정 결과서 (실외)건물별 , (실내) 각층 실별 , [ 산안법 ] [ 대기법 ] [ 환경범죄단속 특별조치법 ]

[ 벌칙 : (특별조치법) 3년 이상 유기징역 / 과실범 : 7년 이하 징역 1억 원이하 벌금 ]

#### 제38조의5 (석면농도기준의 준수)

- ① 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석면해체·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(이하 가칭 "석면농도기준"이라 한다) 이하가 되도록 하고, 증빙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 벌칙 : 1천만원 이하 과태료 ]
- ③ 석면해체·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등 철거·제거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. [ 벌칙 : 5천만원 이하 과태료 ]

## 시행규칙

### 제80조의12 (석면농도측정 결과의 보고)

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석면 농도측정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호의9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제144조(서류의 보존)

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한다. 다만,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.

## 환경부석면관리가이드라인 [ 09.4.10.시행 ]

### 4. 건축물 석면 해체·제거 작업 시 고려사항

4.2 건축물의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은 0.01개/cc를 초과해서는 안된다.

4.4 석면 해체·제거 작업과 청소가 끝난 후에는 작업장의 석면 농도를 측정하여 0.01개/cc 이하임을 확인하여야 한다.

## 8. 농도측정결과(근로자)통보확인서 [ 산안법 ]

### 제42조(작업환경측정등)

③ 사업주는제1항에따른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9. 시공 전·후 사진 (실외)건물 별, (실내)각층 실별, [ 산안법 ] [ 보건규칙 ]

## 시행규칙

### 제144조(서류의 보존) [ 벌칙 3백만원 이하 과태료 ]

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.

④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

### 3.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

## 10. 시공 중 공정별 사진 (실외)건물 별, (실내)각층 실별, [ 산안법 ] [ 보건규칙 ]

[ 행정처분 : 1차/ 영업정지 3개월 , 2차/ 영업정지 6개월 , 3차/ 허가취소 ]

### 시행규칙

제144조(서류의 보존) [ 벌칙 3백만원 이하 과태료 ]

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.

④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

#### 3.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

## 11. 날짜별 법 규정 적합 보호구지급대장 <지급주기포함> [ 산안법 ] [ 보건규칙 ]

[ 행정처분 : 1차/ 영업정지 2개월 , 2차/ 영업정지3개월 , 3차/ 영업정지 6개월 ]

보건규칙220조(보호의등의비치)

허가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도록 하는 때에는 불 침투성 보호의 , 장갑 , 장화 및 피부보호용도포재 비치 하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보건규칙238조의2(개인보호구지급.착용)

석면해체. 제거작업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 방진마스크 , 고글 ,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, 보호신발 등 지급 착용 토록 하여야 한다.

## 12. 근로계약서 [ 근로기준법 ]

[ 행정처분 : 1차/ 영업정지 2개월 , 2차/ 영업정지3개월 , 3차/ 영업정지 6개월 ]

근로기준법제42조(계약서류보존) [ 벌칙 : 100만원 이하 과태료 ]

사용자는 근로자명부 와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근로계약 에 관한중요서류는 3년간 보존 하여야한다.

※(보존기간3년은 일반근로자 기준이며 석면취급 근로자는 30년간 보관 하여야함.)

근로기준법제41조(근로자명부)

사업장 별 근로자 명부를 작성 성명, 생년월일, 이력등 대통령 령 이정하는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.

근로기준법제16조(계약기간)

일정사업의완료에필요한기간을정하는것외에는그기간을1년을 초과 하지 못 한다.

## 13. 현장별, 날짜별 석면 취급 량 기록부 [ 산안법 ] [ 유해법 ]

보건규칙 제217조(기록의보존) [ 벌칙 : 100만원 이하 과태료 ]

사업주는허가대상물질을사용하는때에는허가대상물질의 사용량, 작업내용, 새는(누출)때의 조치 등을 기록 그 서류를 보관 하여야 한다.

### [유해화학물질관리법]

제36조(허가의취소등) [ 벌칙 :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영업정지 ]

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·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8.3.21>

21. 제46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의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·보존 하지 아니한 경우 [개정 2007. 12. 27 ]

## 14. 사전조사서 [ 산안법 ]

제38조의2(석면조사) [ 벌칙 : 5천만원 이하 과태료 ]
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하거나 해체 하려는 자(이하"건축물등 철거·해체자"라한다)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(이하"석면조사기관"이라한다)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(이하"석면조사"라한다)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·보존 하여야 한다. 다만, 석면함유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해당건축물 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
2.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
3.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위치 및 면적

### 환경부석면관리가이드라인[석면사전조사]09.4.10.시행

#### 3-2 석면지도의 작성

(1) 건축물을 소유자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함유설비 또는 자재를 조사하여 그 위치·분포·종류 및 면적 범위 등을 나타낸 석면지도를 작성 하여야 한다.

#### 3-3

건축물소유자는 관리자 또는 임차인등 에게 작성된 석면지도를 공지하고 필요시 경고문등을 표시 하여야한다.

#### 3-5

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전기공사등 소규모건축물 유지·보수시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 하여야 하며, 공사관계자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 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.

#### 3-6

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석면관리 및 석면 비산방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권장한다.

## 15. 지정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서 [ 폐기법 ]

### 제17조 (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의무등) [ 벌칙 : 3백만원 이하 과태료 ]

-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(이하“사업장폐기물배출자”라한다)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.
3.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수집·운반·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수탁자가제13조에 따른 기준에 맞게 폐기물을 수집·운반·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 하여야 한다.

### 제18조 (사업장폐기물의 처리) [ 벌칙 : 3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]

-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,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,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 또는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 <시행일 2008.1.20>

## 시행규칙

### 제17조 (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)

-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사본,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(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나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사본)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.<개정 2008.8.4>
-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·운반·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# 석면제거 작업 개인보호구

## 1. 반 면형 마스크



지급주기 : 작업 전 1회

처리 : 세척 재사용

※ 뿜칠제 제거작업은 전면형 사용

## 2. 특급 필터



지급주기 : 작업 전 : 1조

오전휴식 : 1조

점심 : 1조

오후 휴식 : 1조

계 : 1일 4조

※ 이외 파손 때마다 지급.

처리 : 작업장 외부로 나올 때 마다 갱 의실에서 분진제거 후 벗어 갱 의실 내 보관함에 보관 지정폐기물로 처리

## 3. 불 침투성 보호의



지급주기 : 작업 전 : 1벌

오전휴식 : 1벌

점심 : 1벌

오후 휴식 : 1벌

계 : 1일 4벌

※ 이외 찢어질 때마다 지급.

처리 : 작업장 외부로 나올 때 마다 갱 의실에서 분진제거 후 벗어 갱 의실 내 보관함에 보관 지정폐기물로 처리

## 4. 고글 (보안경)



지급주기 : 작업 전 1회

처리 : 세척 재사용

5. 방진 장갑



지급주기 : 작업 전 : 1조  
 오전휴식 : 1조  
 점심 : 1조  
 오후 휴식 : 1조      **계 : 1일 4조**

※ 이외 찢어질 때마다 지급.

처리 : 작업장 외부로 나올 때 마다 갱 의실에서 분진제거 후 벗어 갱 의실 내 보관함에 보관 지정폐기물로 처리

6. 안전 장화



지급주기 : 작업 전 1회

처리 : 세척 재사용

7. 안전모



지급주기 : 작업 전 1회

처리 : 세척 재사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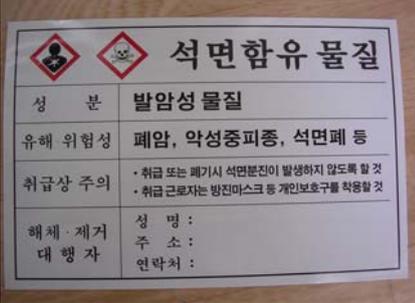
8. 안전 벨트



지급주기 : 작업 전 1회

처리 : 세척 재사용

# 석면제거 작업 설비, 장비, 소모품

1. 석면함유 스티커	2. 비닐 0.15mm 두께	3. 비닐 0.15mm 두께 2겹 백
		
<p><b>사용 용도 :</b> 포장된 폐기물 각 더미에 부착                  [ 성분, 유해위험성, 취급상주의, 해체·제거 대행자 성명, 주소, 연락처 등 ]</p>	<p><b>사용 용도 :</b> 포장, 작업장 바닥, 벽 등  <b>처리 :</b> 작업장 마다 바닥, 벽에 사용된 비닐은 작업종료 청소 후 2겹 비닐 백에 넣어 보관 지정폐기물로 처리                  ※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<p><b>사용 용도 :</b> 작업장 벽, 바닥에 사용된 비닐과 1회사용 폐기용 개인보호구 등 폐기 백.</p>
4. 테이프	5. 안전띠, 타포린	6. 오염제거구역
		
<p><b>사용 용도 :</b> 포장 밀봉 및 작업장 바닥, 벽에 사용한 비닐 겹침 부분 붙임.</p>	<p><b>사용 용도 :</b> 작업자 외 출입금지를 위하여 작업장 입구 설치.</p>	<p><b>사용 용도 :</b> 작업장 출입구에 탈의실, 샤워실, 갹 의실, 순서대로 설치.</p>
7. 냉,온수기 및 배수여과 장치	8. 분무기	9. 침투제, 비산방지제
		
<p><b>사용 용도 :</b> 샤워실 온수 보급 및 샤워중 배출된 폐수에 찌꺼기 등이 배출되지 않도록 여과.</p>	<p><b>사용 용도 :</b> 석면함유자재 제거 전, 후 습윤작업 및 작업종료 후 바닥, 벽 등 습식청소 분무.</p>	<p><b>사용 용도 :</b> 석면함유자재 제거 전, 후 습윤작업 및 작업종료 후 바닥, 벽 등 습식청소</p>

<p>10. 음압기</p>	<p>11. 발전기</p>	<p>12. 이동식 강관 비계</p>
		
<p>사용 용도 : [해파필터장착] 실내 작업 시 실내 작업장 밀폐 공간의 공기 여과 배출.</p>	<p>사용 용도 : 건축물 철거 작업장 은 전기단전으로 작업에 필요한 장비·설비 등에 전력 보급.</p>	<p>사용 용도 : 실내작업 / 작업대. 실외작업 / 크레인 사용 하역작업 않은 때 하역작업 작업대.</p>
<p>13. 강관비계</p>	<p>14. 진공청소기</p>	<p>15. 전동공구</p>
		
<p>사용 용도 : [ 높이 2m 이상 작업장소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설비 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붕 및 외벽 작업 시 건물 외 벽을 따라 쌍줄로 비계설치 하고 처마단부로 발판을 설치 작업자 이동 통로 사용.</li> <li>2. 지붕 상부로 수평비계를 설치 작업자의 안전대 고리를 걸어 사용하도록 하여 추락 방지.</li> </ol>	<p>사용 용도 : [ 해파필터장착 ] 작업장 바닥, 벽 등 청소.</p>	<p>사용 용도 : 천정작업 시 고정 못 제거.</p>
<p>16. 카타기</p>	<p>17. 경고표지판</p>	<p>경고 표지판</p>
		
<p>사용 용도 : 슬레이트 등 고정 못 제거.</p>	<p>사용 용도 : 작업장 주 출입구 설치.</p>	<p>사용 용도 : 금연 , 출입금지 / 작업장 내 설치</p>

<b>18. 안전, 보건 표지판</b>	<b>안전, 보건 표지판</b>	<b>19. 석면작업 안전수칙</b>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

**사용 용도 :**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작업장 내 설치.

**사용 용도 :**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작업장 내 설치.

**사용 용도 :** 석면 취급, 처리 시 작업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작업장 내 설치.

**20. 물질안전보건자료**

**21. 지정폐기물 보관중 표지판**



**사용 용도 :** [ M . S . D . S ] 유해성 , 착용 하여야할 보호구 , 석면취급 시 주의사항 ,응급조치 요령 등

**사용 용도 :** 임시보관장소 설치 [ 물질명, 보관량, 보관기간, 책임자, 연락처, 보관.운반시 주의 사항, 처리예정 장소 등 ]